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이종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98
----------	-------

발의연월일 : 2018. 6. 25.

발의자 : 이종명 · 김규환 · 김세연

권성동 · 윤종필 · 김성찬

곽대훈 · 박성중 · 정갑윤

박명재 · 여상규 · 임이자

정대수 · 이종구 · 신보라

이용호 · 김태흠 · 서청원

김순례 · 최교일 · 김석기

문진국 · 김선동 · 김진태

윤한홍 · 추경호 · 곽상도

홍문표 · 金成泰 · 송희경

최연혜 · 조훈현 · 유민봉

이정현 의원(34인)

제안이유

6·25전쟁 당시 전장에서 무공을 세워 무공훈장 수상자로 명령이 발령된 16만 2,950명 중 약 34%에 달하는 5만 5,748명에 대한 훈장이 아직까지 수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육군본부에서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고는 있으나, 당사자들의 고령화 및 행정 인력의 부족 등으로 사업 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겪고 있음. 현재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

할 경우, 무공훈장 수여를 완전히 완료하기까지 약 30여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6·25전쟁 무공훈장을 되찾아 주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더 늦기 전에 전시에 국가를 위하여 공훈을 세운 사람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게 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게 함(안 제5조).

나.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을 두도록 함(안 제6조).

다. 공로자로 확인된 사람에게는 「상훈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라 무공훈장을 수여하도록 함(안 제8조).

라. 국방부장관은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6·25전쟁 중에 공로를 세운 사람으로서 무공훈장을 받지 못한 사람을 조사·인정하여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6·25전쟁을 말한다.
2. “공로자”란 6·25전쟁 중 세운 공로로 인하여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로 결정되어 국방부의 상훈명령과 행정안전부의 무공훈장 서훈자 기록부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가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한 공로자의 가족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로자에 대한 무공훈장의 수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공로자를 조사·인정하고 이들에게 무공훈

장을 수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국방부장관은 행정기관의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임을 검증하고 병적과 제적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②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등록 신청을 받으면 실제 무공훈장을 수여받기로 결정된 사람이었는지 등을 심사하여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통보, 불복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 ①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조사단에 단장 1인과 필요한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15인 이내의 단원을 둔다.

③ 단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하여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추천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그 밖에 조사단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로사실의 조사 등) ① 단장은 공로자에 대한 조사 및 신원확인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공로자임이 확인되면 해당 공로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통보받은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 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무공훈장의 수여 등) ① 제5조에 따라 공로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상훈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라 무공훈장을 수여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지원하거나 주최할 수 있다.

제9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① 국방부장관은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공로자와 관련된 제보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에 대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국방부장관은 조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